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비용 전부 지원〉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08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비용 전부 지원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1.
3. 회부연월일 : 2024.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한도 및 조건은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등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의 자부담 사업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상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보조하도록 함으

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업비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비용 전부 지원

개정안은 시설현대화사업 비용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⑨ 제8항에 따른 지원·보조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할 경우 자부담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전통시장의 매출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이 시설현대화사업 비용 전부 지원을 의무화하면서도 지원·보조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령에서 지원·보조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일부 입법례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조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조금 편성에 관한 재량이 축소되어 보조금 편성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⁵⁾도 있음.

3)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를 최대 ±10% 차등지원하거나 상인조직의 자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40호,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8.9.).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의 신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사업 신청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5)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470